

# 교직원보수규정

2015.03.01. 제정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혁제학원(이하 ‘법인’이라 한다) 정관 제50조 및 제78조에 의하여 국제영어대학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 재직하는 교직원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1. 이 규정은 본교 교직원에게 적용한다.  
2. 비정규계약직으로 고용된 자의 연봉은 따로 정하는 연봉계약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수”라 함은 계약 연봉과 각종 수당 및 상여금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계약 연봉”이라 함은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28일까지 1년간의 교직원 개인별로 체결한 연봉계약에 따라 정액지급하기로 한 연봉액을 말하며 연구보조비, 출산·6세 이하 자녀의 보육비 등 관련법에 따른 비과세 급여를 포함한다.
3. “수당”이라 함은 직무 여건 및 기타 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로서 직책수당, 특근수당 및 기타수당 등을 포함한다.

## 제2장 보수

**제4조(보수)** 각 교직원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총장이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5조(보수계산)** 1. 교직원의 보수는 월 또는 회계연도를 단위로 계산한다.  
2. 신규임용, 승진, 전보, 승급, 감봉, 징계에 의한 파면, 해임 및 면직되는 경우에는 그 보수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보직 보임, 의원면직 및 휴직의 경우에는 당월 보수의 전액을 지급한다.

**제6조(보수지급일)** 1. 보수는 매월 25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25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직전 근무일을 보수 지급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총장은 교직원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보수 지급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 면직 또는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휴직의 경우에는 전항에도 불구하고 면직 또는 휴직일에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휴직 또는 수습기간 중의 보수)** 휴직 중인 교직원에 대한 보수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병역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한 경우
3. 법률 및 기타 사유로 직무를 이탈하게 된 경우
4.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과 재외국민교육기관에 고용된 경우
5. 육아를 위해 휴직하는 경우
6. 개인 사유로 휴직하는 경우

나.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연봉월액의 50%를 지급한다.

1. 직무외의 질병으로 인하여 계속 근무를 하지 못하는 경우 6개월에 한하여 지급
2.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하게 된 경우 1년에 한하여 지급

다. 수습기간 중인 직원의 보수는 계약연봉의 80%를 지급하며,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단, 경력직으로 채용될 경우 수습기간만을 적용하고 연봉은 전액 지급한다.

라. 직무상의 질병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 6개월까지 계약연봉의 100%를 지급한다.

마. 해당 규정에 따른 연구년 기간 중에는 계약연봉의 100%를 지급한다.

바. 여교직원의 출산으로 인한 휴가(최대 90일 이내)일 경우 계약연봉의 100%를 지급한다.

사. 기타 사유로 휴직을 하는 교직원의 보수는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제8조(직위해제, 정직, 감봉기간 중의 보수)** 1. 직위해제기간 중의 보수는 계약연봉의 80%를 지급한다. 단, 직위해제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법인 정관 제49조(직위해제 및 해임)에 따라 지급한다.

2. 정직중인 자에 대하여는 계약연봉의 50%를 지급한다.

3. 감봉중인 자에 대하여는 계약연봉의 80%를 지급한다.

**제9조(면직 또는 징계처분 등이 취소된 교직원의 보수지급)** 1. 교직원에게 행한 징계처분, 면직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징계의결요구에 따른 직위해제 처분은 제외한다)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처분 당시의

보수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재정계절차에 의하여 징계처분한 경우에는 재정계처분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되 재정계처분 전의 징계처분기간에 대하여는 보수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2.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당해 징계의결요구가 기각되거나 그 직위해제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 이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처분 당시의 보수액과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중에 지급한 보수액과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 제3장 연봉

**제10조(연봉)** 1. 본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은 1년을 기간으로 하는 연봉 계약을 개인별로 체결한다.

2. 연봉의 지급 및 기타 사항은 연봉계약서에 따른다.

### 제4장 수당

**제11조(수당범위)** 본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직책수당, 특근수당 및 기타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직책수당)** 본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1> 의 지급기준에 따라 직책수당을 지급한다. 단, 본직 이외의 다른 직책을 겸직할 경우 별도의 직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13조(특근수당)** 특별히 발생한 추가 업무로 인한 주말 및 휴일 근무에 대해 대체 휴가 또는 정액의 특근수당을 <별표-2> 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기타수당)** 수당지급과 관련된 사항 중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기 승인된 예산범위 내에서 총장이 이사장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 한하여 시행 할 수 있다.

### 제5장 상여금

**제15조(상여금)** 1. 본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에게는 <별표-3> 의 지급 기준에 따라 연봉 및 수당과 별도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근무기간이 만 1년 미만인 교직원에 대하여는 기본 지급률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기본 지급률 외에 개인별 성과 지급률에 대해서는 근무평가 및 실적, 표창 등 업무성과를 고려하여 상여금 지급 예산 범위 내에서 총장이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개인별 차등 배분하되 개인별 상여금 총액은 보수월액의 200%를 초과할 수 없다.
3. 지급 가능한 상여금 총액이 기본 지급률 적용에 의한 산출금액보다 적을 경우 총액 대비 비율을 기본 산출금액에 일괄 적용하여 지급한다.

## 제6장 퇴직금

**제16조(퇴직금 대상)** 본교에 1년 이상 근속한 교직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

**제17조(퇴직금 기준)** 퇴직금은 실 근무연수 1년에 대하여 1개월분의 계약 연봉으로 일할 계산하여 산정 지급한다.

##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며 기존 교직원보수규정을 대체한다.